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요금의 신고제 도입 〉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11호)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0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요금의 신고제 도입	3

I. 제안경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7.

다. 회 부 일 : 2025. 11.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7.

다. 회 부 일 : 2025.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

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77조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Ⅲ. 검토의견

1.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요금의 신고제 도입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최소채널상품¹⁾ 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²⁾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

2)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

현행	개정안
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 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삭 제> ⑥ ----- ----- -----제1항에 ----- -----

현행	개정안
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변경신고의-----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
1. ~ 11의2. (생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 -----제3항을----- ----- -----아니하고----- -----
12의2. ~ 28. (생략)	12의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략)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삭제>

현 행	개 정 안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 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u> <u>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u> <u>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한다.</u> 1. <u>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u> <u>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u> <u>되지 아니할 것</u> 2. <u>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u> <u>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u> <u>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u> <u>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u> <u>산정되었을 것</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u> <u>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u> <u>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1의2. (생략)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 이</u> <u>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u> <u>받지 아니하고</u>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u>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4. ~ 6. (생략) ②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의----- -----<u>변경신고의</u>----- ----- -----. 제28조(과태료) ①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1항을</u>----- ----- -----<u>아니하고</u>----- ----- -----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PP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요금에 관한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①최소채널상품 또는 ②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관한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와 승인은 처리 기한³⁾ (신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승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큰 차이가 있으며,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요금에 관한 약관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와는 다르게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3)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관한 승인제는 TV시청자의 대부분이 유료방송에 가입⁵⁾한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그런데, 동일 권역 내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전국 단위 위성방송, IPTV 등장으로 유료방송시장이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2016년 「방송법」⁶⁾ 및 「IPTV법」⁷⁾ 개정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채널 상품’을 제외한 ‘비실시간 방송채널 상품’⁸⁾ 요금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 이후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료방송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 「방송법」⁹⁾ 및 「IPTV법」¹⁰⁾ 개정으로 최소채널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3,623만명

6) 법률 제13821호, 2016.7.28.시행

7) 법률 제13708호, 2016.7.7.시행

8)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콘텐츠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9) 법률 제18732호, 2022.7.12.시행

10) 법률 제18735호, 2022.7.12.시행

합상품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관련 규제 완화 연혁>

구 분		~2016년	2016년 개정	2022년 개정 (현행)	개정안
실시간 방송	최소채널상품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	승인	승인	승인	<u>신고</u>
	그 외			<u>신고</u>	신고
비실시간 방송		승인	<u>신고</u>	신고	신고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신고/등록제¹¹⁾를 적용받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유료방송과 달리 이용요금의 설계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제 비대칭 속에서 국내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24년 상반기에 처음 감소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SO와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가입자 수 및 전기 대비 증감률(단위: 단말장치 · 단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가입자	36,347,495	36,390,365	36,384,610	36,364,646	36,226,100
IPTV (증감률)	20,814,402 (1.21%)	21,003,615 (0.91%)	21,149,096 (0.69%)	21,310,251 (0.76%)	21,414,521 (0.49%)
SO (증감률)	12,631,281 (-0.77%)	12,541,500 (-0.71%)	12,412,496 (-1.03%)	12,273,100 (-1.12%)	12,091,056 (-1.48%)
위성방송 (증감률)	2,901,812 (-1.74%)	2,845,250 (-1.95%)	2,823,018 (-0.78%)	2,781,295 (-1.48%)	2,720,523 (-2.19%)
증감폭 (증감률)	99,098 (0.27%)	42,870 (0.12%)	-5,755 (-0.02%)	-19,964 (-0.05%)	-138,546 (-0.38%)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 11. 24.)

○ 이처럼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OTT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 문제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글로벌 OTT와의 규제 격차로 인한 국내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편성 등 규제 개선을 밝힌 바 있음.
- 2024년 3월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의 명시, 소유제한 및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관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계하여 신속히 신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7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 당시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도 ①최소채널상품, ②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최소채널상품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최소채널상품’은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으로 정의되는 기본형 상품으로서 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 가격 민감도가 높고 OTT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미디어 접근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최소채널상품에 대한 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방송사

업자가 갑작스럽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본 제공 채널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 폐지는 통신(인터넷·모바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방송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총 16,920,187건의 계약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약 46%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결합상품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방송 포함 결합상품 사업자별 가입자 규모(계약건수 기준)¹²⁾>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2~'23증감
KT	4,965,558	5,196,693	5,379,514	5,498,213	5,599,499	5,679,176	79,677
KT스카이라이프	35,840	101,599	187,511	284,703	364,819	416,882	52,063
HCN			161,646	155,584	139,877	126,232	-13,645
KT계열	5,001,398	5,298,292	5,728,671	5,938,500	6,104,195	6,222,290	118,095
SKB(IPTV)	3,498,737	3,690,130	3,864,221	4,001,982			0
SKB(SO)		550,815	539,789	515,479			0
SKB	3,498,737	4,240,945	4,404,010	4,517,461	4,647,329	4,890,580	243,251
LGU+	3,248,016	3,451,309	3,660,264	3,986,808	4,165,646	4,154,401	-11,245
LG헬로비전		785,463	770,869	795,530	816,978	823,032	6,054
LG계열	3,248,016	4,236,772	4,431,133	4,782,338	4,982,624	4,977,433	-5,191
SO 합계	2,462,673	2,384,821	2,338,888	2,314,837	1,797,753	1,779,148	-18,605
전체	14,210,824	14,824,552	15,430,398	16,086,544	16,575,046	16,920,187	345,141

주: 1) SKB는 2022년부터는 SKB(IPTV), SKB(SO) 부분 별도 통계없이 합병법인 전체 통계만 존재
 2) 2022년 SKB(SO) 별도 통계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SO 합계'에는 SKB(SO)가 제외(2021년까지는 SKB(SO)를 포함)
 3) 이에 따라, '전체'는 2021년까지는 'KT스카이라이프 + KT + SKB(IPTV) + LGU+ + SO 합계', 2022년은 'KT스카이라이프 + KT + SKB + LGU+ + SO 합계'로 계산됨
 4) SO 일부 사업자가 2020년, 2021년 수치를 수정 재제출함에 따라 2020년, 2021년 SO 합계 및 전체 합계 수치에 이전 보고서와 차이가 존재
 자료: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각 연도 사업자 제출 자료

- 동 평가에서 실시한 결합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하게 고려한 서비스로 약 46.0%의 가입자가 이동전화를, 약 27.5%의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선택한 것에 반해 유료방송을 선택한 가입자는 20.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방송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¹³⁾.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438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449

- 이러한 현실에서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 제로 전환할 경우, 이미 강력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방송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되고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여부 및 방향에 대하여는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의 해소를 통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최소채널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승인제를 유지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 그 밖에 개정안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약관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승인제를 유지하고 있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완화 시에도 부당한 시청자 이익 침해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SO협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존 사업자가 시의성 있게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OTT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전환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중소PP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채널 퇴출 및 매출 감소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소PP 보호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절차적 규제 완화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가치의 저평가 및 무단 콘텐츠 이용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콘텐츠의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법제화하여 PP의 정당한 대가 산정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